

2026년도 「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 및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도 「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주무부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 원 화

1. 사업개요

☐ 사업분류 : 세부국가간협력기반조성 > 내역공동연구 > 내내역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 사업목적

- 한국과 중국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 내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연구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공모형태	지원분야*	연구기간 (연구개시일**)	연간 연구비 (총 연구비)	선정규모
자유공모	①BT, ②ICT	3년(36개월) (26.10월 중)	500백만원 (1,500백만원)	2개

* 중국 측 연구자와 지원분야 협의 후 반드시 동일한 분야로 지원해야 함.

** 연구개시일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간접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2. 신청(수행)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한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참여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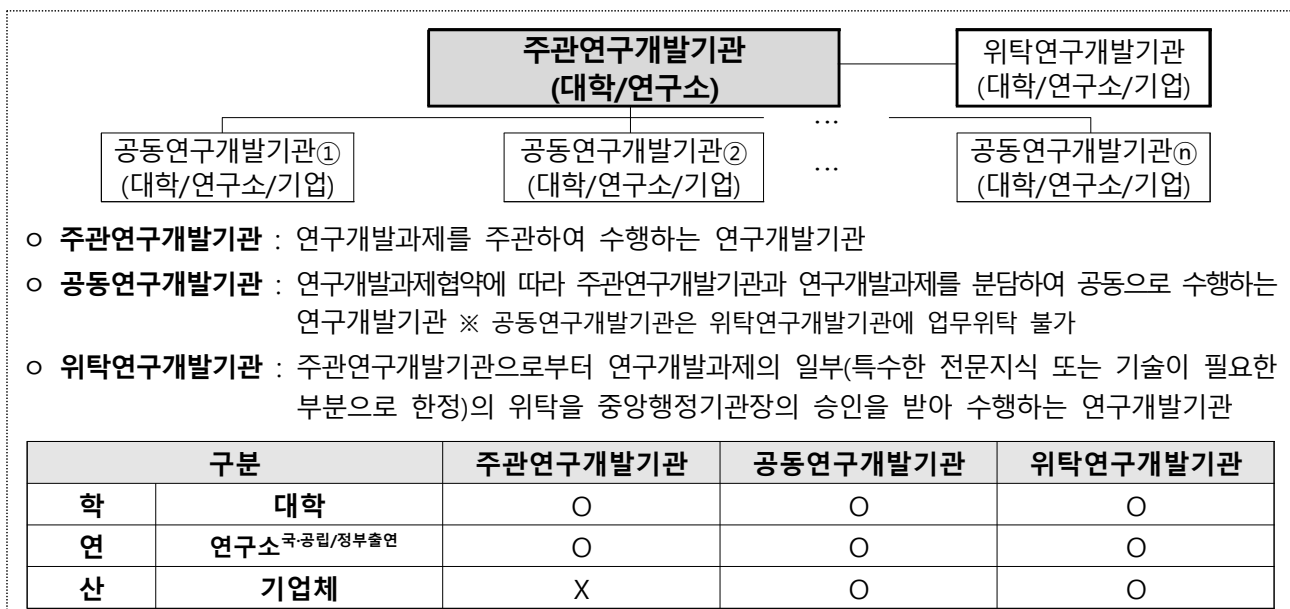
- **(1인 1과제)** 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사업 1인 1과제 수행 제한 기준 적용
- **(정부R&D 공통 제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책임자 연구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만 과제신청 및 참여가 가능함. 신청 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동 과제는 선정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날 까지 참여제한 기한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연구과제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참여제한 여부 확인 요망(<http://www.ntis.go.kr>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차별성)** 기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의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NTIS를 통해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중심으로 기 수행 과제와의 차별성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차별성 여부 최종 결정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내 **연구과제 수 상한 제도(3책5공) 적용**

3. 과제구성

- **(컨소시엄)** 주관연구개발과제 및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로 구성하되 최소 3개 기관(대학, 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 기업 각 1개 기관)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대학 또는 연구소에 한하며**, 기업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컨소시엄 최소 구성 요건(산·학·연 각 1개 기관 참여) 충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가 참여 가능**
※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공동/위탁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수행할 수 있음.
- **(연구비)** 산·학·연 컨소시엄 내에서 과제별로 정부출연 연구비 배분
 - 공동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과제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과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업체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참고①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체계 및 연구개발기관 유형>



<참고②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 주요 차이점>

구분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수행제한(3책5공)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의 4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업)	있음	제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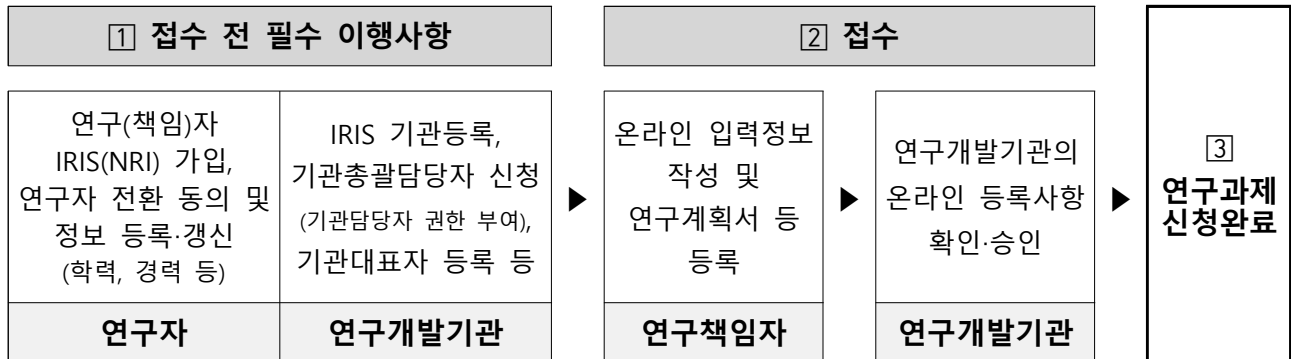
* 단, 본 사업에서는 주관연구기관 정부출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 관련) 참고

4. 신청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 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 ① (연구자) ①IRIS 회원가입, ②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 ②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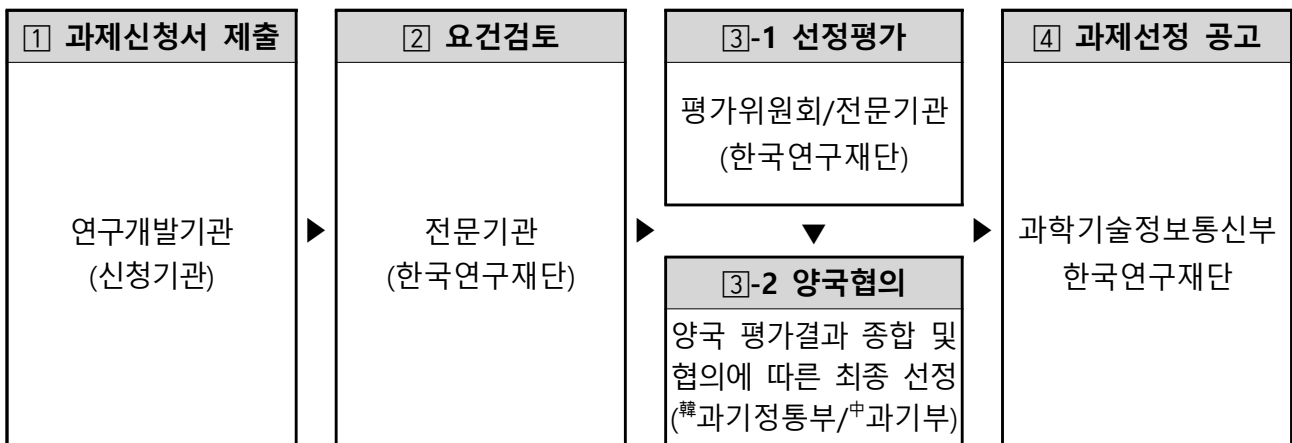
5.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참고] 동 사업은 국가 간 국제공동연구로, 한국과 상대국 간의 상이한 평가절차와 선정협의 과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선정 공고가 지연될 수 있음.

□ 추진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 선정절차



- ① **과제신청** : 한국 측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과제신청서 제출
 ※ 중국 연구개발기관은 중국 과학기술부 공고 및 양식에 따라 과제 신청
- ② **요건검토** : 접수마감 후 실시하며, **자격요건(양국 공동접수 여부 등)** 미충족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③ **선정평가** : 양국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종합 후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과제 확정**
 * 양국 평가결과가 모두 우수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④ **과제선정** : 양국 부처의 최종승인 절차를 거쳐 선정과제 공고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방법)** 연구과제 특성 및 연구개발 단계 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방식* 도입
 * 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등 다양한 평가방식을 조합하여 평가계획 수립
- **(평가위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 **(평가항목)** 공동연구 필요성, 계획 적절성, 연구역량,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 등

평가항목	세부내용
공동연구의 필요성	- 해당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필요성 - 국제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
공동연구 목표와 수행계획의 적절성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의 명확성 및 적절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 학문적 연구능력의 탁월성 - 해당 분야 연구성과의 우수성 및 동 사업과의 연계성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 참여기업의 재무 안정성 정도 - 공동연구 수행 시 양국 연구팀 간 역할 배분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기관 및 기업 간 역할 배분의 적절성
양국 간 협력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 상대국과의 협력 지속 가능성 -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증진 기여도
기대성과 및 상용화 방안의 적절성	- 연구수행성과의 수준 및 파급효과 - 특허 출원, 등록,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실용화, 후속연구 추진 계획 등 - 연구성과의 기술,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 방안 - 연구성과의 활용 가능성

※ 상기 평가항목은 평가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 피평가자는 평가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 통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6.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사업명	연구책임자 온라인 신청기간	연구개발기관 승인기간
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2026.5.11.(월) 14:00:00 ~ 2026.6.18.(목) 17:00:00	2026.5.11.(월) 14:00:00 ~ 2026.6.19.(금) 17:00:00

※ 연구자 접수마감 기간 이전 반드시 “제출완료” 처리가 되어야 하며(“계획서 작성 중”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 연구개발기관 접수마감 이후에 접수된 데이터 및 파일은 변경 불가

※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주체			분량제한	비고
			주관	공동	위탁		
1	연구개발 계획서	PART1(표지1)-웹입력	○	-	-	-	[양식1]
		PART2(본문1)-작성서식	○	-	-	30쪽 이내	
		PART3(본문2)-웹입력	○	-	-	-	
2	연구계획 영문요약서		○	-	-	2쪽 이내	[양식2]
3	신규과제 기타증빙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	-	[양식3]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등	○	○	○	-	
4	기업 참여의사 및 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양식4]
5	기타 증빙(필요 시) ※ 별도 양식 없음.		-	-	-	-	-

※ 연구개발기관 별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기업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가 불가함에 따라, 기업 관련 서류는 공동 또는 위탁과제에 한함.

7. 기타사항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시 유의사항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25.9, 한국연구재단) 참조

○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신청자 및 수행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중간(단계)/결과(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 및 활용할 경우,

① 해당 자료의 적절한 위치에 AI 도구 사용 내역을 기술(권장)

표기 항목(예시) : AI 도구 회사/연도/이름(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 유형]*, URL, 활용방법 등

* 자료 유형: 대형언어모델(LLM), 소프트웨어(SPSS, MATLAB 등 통계나 수치분석 도구 등) 같은 AI 도구의 유형

② 연구자가 직접 출처를 검증하여 AI 활용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연구윤리 위반 가능성을 점검, 필요시 수정·보완

※ AI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위조, 변조 등 다양한 연구진실성 위반 사례 예방 목적

③ AI 활용 시 연구정보(연구데이터, 과제정보, 수행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연구개발계획서 등 각종 연구자료를 AI 도구에 업로드하여 연구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AI 도구를 활용한 연구자에게 책임이 있음.

□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연구(책임)자가 부실의심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과제 평가결과(선정·단계·최종)에 반영될 수 있음.

□ 연구성과 관리

- 공동연구에 의해 확보되는 우선실시권, 기술료 배분 등은 연구개발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예방을 위하여 연구개시 이전에 양측 연구기관 간 ‘지적재산권에 관한 합의서’ 체결 의무화 ※ 연구협약 체결 시까지 동 합의서 제출 필수

□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천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여 단순 문의·제안·논의·종료사항은 미포함

□ 중국 측 연구책임자와 협의 시 참고사항

○ 중국 측 프로젝트 협력 목표, 성과 및 평가 지표

- 한국 측 파트너와 공동으로 논문 2편 이상 발표
- 한국 측 파트너와 공동 발명특허 2건 이상 출원
- 연구 주제와 관련된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 2회 이상 공동개최 (각 세미나에는 기업대표 20인 이상 참석, 한국 측 대표 5인 이상 참석)

※ 위 내용은 중국 측 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양국 연구책임자 간 협의 시 상대국에 확인 필요

□ 사사표기(양식)

▶ 국문표기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RIS 과제번호).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IRIS 과제번호).

* 성과는 논문, 특허 등 실제 성과 명칭으로 대체 사용 가능 /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8. 추진일정(안) ※ 하기 일정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26.5.6.(수)	· 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 공고	-
2026.6.18.(목)	· 신규과제 접수 마감	-
2026.7~9월	· 선정평가 및 부처심의	-
2026.10월	· 신규과제 연구개시	-

9.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한-중 산학연 대형 공동연구	한국연구재단 미주아시아협력팀	(사업관련) 02-3460-5702 (접수관련) 02-3460-5704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IRIS 콜센터	1877-2041
	IRIS 홈페이지	알림·고객>시스템·서비스문의>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참고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지원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금액의 부담시기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까지, 협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나. 연구시설·장비비
-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예시) 중소기업 산출방식]

○ 중소기업의 경우 변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함

구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현금(b)	기업부담금 현물(c)	기업부담금 계 (d=b+c)	총 연구개발비 (k=a+d)
수식	- 중소기업 부담금 산출방식 : $d \geq (a / (1-0.25)) - a$				
충족조건	- 중소기업 부담금 충족조건 : $d \geq k \times 0.25$ - 중소기업 현금부담기준 충족조건 : $b \geq d \times 0.1$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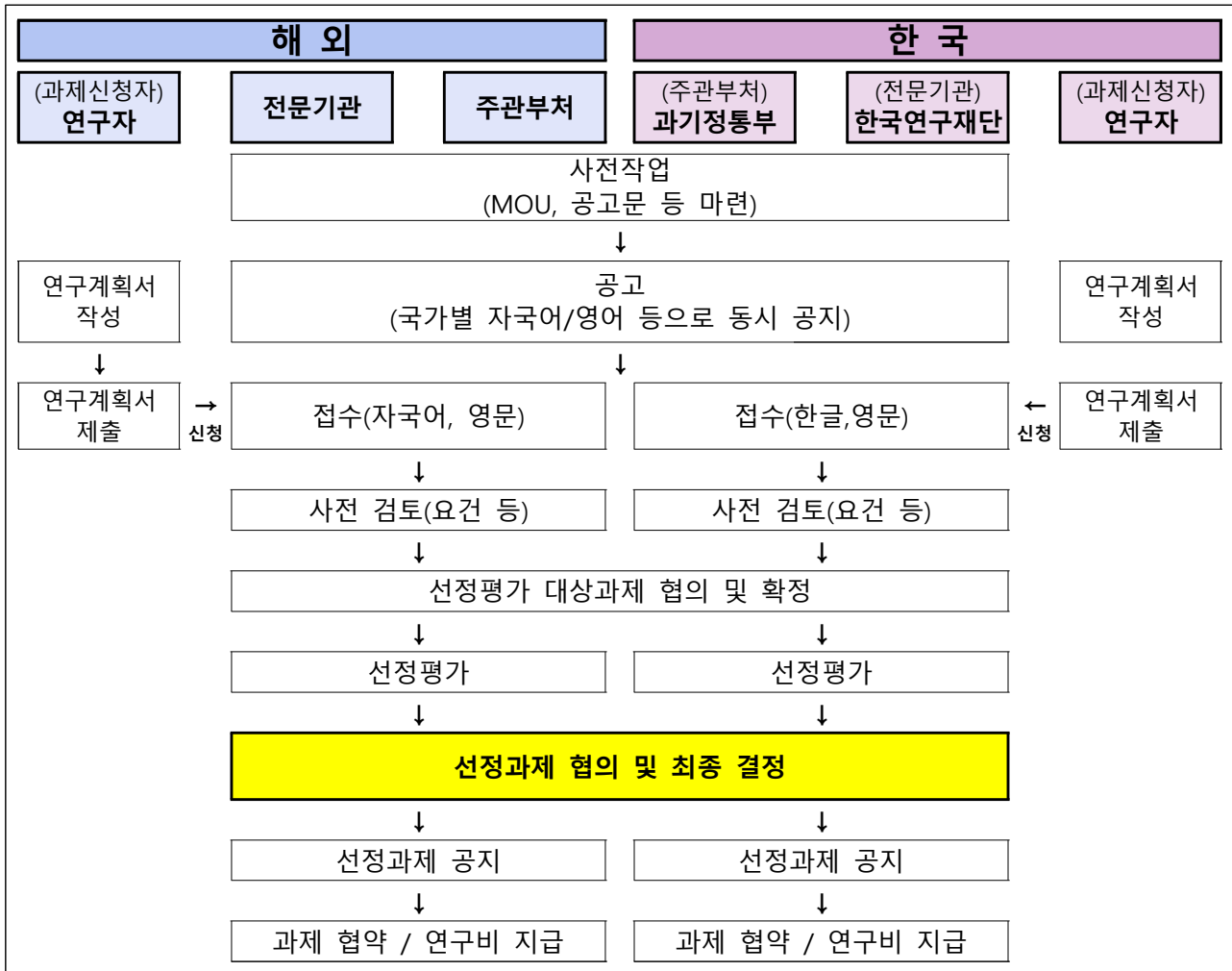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참고 2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공동연구)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 사업 추진 체계



□ 선정평가 절차 ※ 하기는 표준절차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전문기관에서 제출서류 구비요건, 신청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 ※ 양국 과제가 모두 사전검토를 통과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 포함
- 선정평가: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항목 당 점수 부여
 - ※ 상대국 과제의 선정평가는 상대국 기관에서 시행
- 양국협의: 양국 간 평가결과 교환 및 최종 선정과제 협의
 - ※ 양국 전문기관이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적격과제 추천 후 합의를 통해 최종과제 선정